

II.

법제처 심사 전의 입법절차



01 법령안 입법절차의 추진 주체

법령안의 입법절차는 해당 법령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진행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부(部)·처(處)·청(廳)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¹⁾)이 포함된다.

실무사례

법령안 주관기관의 변경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정보 검색 사이트, www.law.go.kr)의 법령에 표시된 법령안의 주관기관은 해당 법령의 제정 당시의 법령안 주관기관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조직의 개편 또는 업무의 이관 등에 따라 법령안의 주관기관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정보 검색 서비스 업무 담당부서, 044-200-6789, 6790)에 표시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상 부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고(「정부조직법」 제19조제2항, 제29조제2항),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의안(議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정부조직법」 제12조제3항, 「국무회의 규정」 제3조제1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인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법령안을 제출한다.

1)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헌법 제100조는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감사원법」)에 위임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각각 그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그러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처(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식품의약품안전처)·청·위원회 등인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인 장관을 제안관서로 하여 국무회의에 법령안을 제출해야 한다.²⁾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또한, 법령안의 내용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절차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³⁾이지만 서로 협의하여 특정 기관이 주도할 수도 있다.

02 법령안의 입안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령안을 입안하게 된다. 대체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정책추진팀 또는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정책의 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고, 법령안의 작성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검토·정리한 결과에 따라 조문화 작업을 거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의 조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여 법령안의 작성 자체만을 위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의뢰하기도 한다.

법제처(법제지원총괄과)는 법령안의 입안과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법령안 주관기관을 입안 단계에서부터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입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므로 국무총리가 의안의 제출자가 되고, 청은 부(部)의 소속기관이므로 국무위원인 부(部)의 장관이 제출자가 되며, 감사원 등 대통령 소속기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장관(「정부조직법」 제37조제1항)이 제출자가 된다. 또한, 개별법에서 제출자를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통령 소속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부와는 사실상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제출자가 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제출자가 된다.
- 3) 공동소관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부처는 다른 공동소관 부처의 개정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정시기가 비슷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수요를 병합하여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법률의 경우 공동소관 부처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어느 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 분리하여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① 법령입안지원 제도

- 부처의 입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부처에서 법령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법령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등을 지원해 주고, 부처에서 초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안이 잘 규정되었는지를 검토해 주는 등 효율적 입법 추진을 지원해 주는 제도

〈 법령입안지원과 사전심사와의 구별 〉

구 분	법령입안지원	사전심사
법적 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제6항
제도 성격	부처 입안을 지원(심사 X)	법령 심사의 일환
요청 시기	부처의 입안 단계 (사전 심사나 법령심사 전)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중
법제처 역할	Counselor	Supervisor
담당 부서	법제지원총괄과	법제(심의)관실

② 지원 대상 법령

- 정부제출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 * 제외 대상 : 의원발의 법률안, 그 밖의 행정규칙안,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 조례안

③ 입법 지원 내용

- 법안의 제정 필요 여부, 정책 내용에 따른 조문화, 특정한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 적용례·경과조치 등 부칙에 관한 사항까지 법령 입안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법리적 문제에 대하여 신청 가능

④ 법령입안지원 신청 방법

1) 서면상담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로 공문 시행

2) 대면상담

- 법제지원총괄과(세종청사, 7-1동 704호)
- 서울법제지원센터(서울청사 514호, 일정 등 추가사항은 공문 참조)

* 문의: 044-200-6833, 6840

법령안은 정책을 결정하고 그에 대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안하게 되므로, 법령안의 입안시기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법률의 일부 내용을 하위법령(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해야 법률의 시행이 가능하므로, 법률의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그 하위법령의 입법이 완료되어야 한다.⁴⁾ 따라서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법률의 시행일을 정할 때 하위법령의 입법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제1항).

그러나 법률의 시행이 시급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안의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의 심의가 이루어질 때 하위법령의 입안 등 필요한 입법준비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실무사례

법률과 하위법령의 동시 시행

법률과 동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의 입법절차는 적어도 해당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기간의 단축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며,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공포안과 동시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령안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⁵⁾에 따라 작성하되, 정부입법시스템⁶⁾에서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법제처에 법령안의 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하여 법제처에

4) 법제처는 이러한 하위법령 중 대통령령의 정비가 필요한 법률을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으로 지정하여 그 대통령령의 정비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5) 「법령입안·심사기준」은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종합·정리한 것으로,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것이므로,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고, 심사해야 한다.

6) 정부입법시스템은 종전 입법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공포까지 모든 입법업무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부내용은 “Ⅷ 정부입법지원센터 소개 및 활용방법”에서 확인한다.

제출해야 한다. 정부입법시스템의 법령안편집기를 사용하면 복잡한 제·개정문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편리함이 있으므로, 법령안을 입안할 때는 처음부터 정부입법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법령안에는 법제처 법령정비과제⁷⁾가 모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각 법령별 법령정비과제는 연도별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 또는 정부입법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즉,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국회 심의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입법절차 즉 대통령재가 절차, 국회제출, 법령안의 공포 절차 등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해당 법령안의 입법의도와 시행시기 등이 의도한 바와 같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03 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은 법령안을 입안한 후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협의 대상 관계 기관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2013. 10. 10.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제1항)이 개정되어 해당 법령안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였다.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의견회신 기간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4항).

7) 법령정비과제는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서, 법제처는 법령심사·법령해석 등 법제업무를 통해 발굴하거나, 국민과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한 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과제로 선정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정 사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입법례도 있다. 그러나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시행 과정에서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필요하다.

부처협의를 관한 관계 법령

▶ 국무회의 규정

제4조(합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처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감사원법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① 국가의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감사원에 보내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1. 국가의 회계 관계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2. 국가의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부기(簿記)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3.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배제·제한하는 등의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4. 자체감사 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 국가재정법

제11조(업무의 관장) ①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④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인재개발·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②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① 행정기관이 선거(委託選舉를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실무사례

필요적 부처협의 사항 및 관계 부처

1. 회계·감사 관련 사항: 감사원
2. 예산, 기금 등 예산수반 관련 사항: 기획예산처
3.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 출연, 투자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조직과 운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특례 등: 재정경제부
4. 벌칙, 질서위반행위벌: 법무부
5. 행정조직, 지방자치, 공유재산 특례, 위원회, 서식 등: 행정안전부
6. 경쟁제한사항: 공정거래위원회
7. 공무원의 인사: 인사혁신처
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사업대상, 선정기준,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명시된 법령안만 해당): 보건복지부
9.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10. 정부업무평가의 별도 실시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1. 선거(위탁선거 포함)·국민투표·정당 관련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 법령상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부처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그 법령안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정하려는 것이지만 반드시 국무회의 참석기관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조직법」과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정부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⁸⁾(예 : 처·청·위원회 등)의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도 사전에 협의를 하여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 관행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어느 한 기관에서만 반대하더라도 해당 법률안이나 대통령령안은 의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관계 기관 간의 이견을 철저히 조정해야 한다.⁹⁾ 이견 조정과정에서 법리적 견해의 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4)하거나, 차관회의에 주요토의과제(작성방법 및 절차는 p.158 이하 참조)를 붙여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법령안 주관기관에서 관계 기관 협의 시에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공문서를 발송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부처협의를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법령 개정내용상 정책적 이해가 현저한 관계 기관(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적 통보 및 협의과정이 필요하므로, 소관 법제(심의)관실에서는 법령안 심사 시 첨부된 합의공문 등을 통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총리령안·부령안의 경우에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 여부를 소관 법제(심의)관실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후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나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다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8) 「국무회의 규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시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계기관 협의대상에 서울특별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9)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차관회의 규정」 제7조제1항)하도록 되어 있으나 역시 관행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다.

원안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부처협의를 다시 해야 하는 요건과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하는 요건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재협의 요건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재입법예고 부분(p.22)에서 후술한다.

실무사례

관계 기관 협의 시 연관법령의 동시개정 필요성 검토

법령 상호 간에는 수직적·수평적 연관관계가 있는데 연관법령 간 개정 시차가 발생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통일성·형평성·체계정당성 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은 법령안의 입안이 완료되면 ① 소관 법령안의 개정사항과 동일·유사한 규정이 다른 법령에 있는지 확인하고, ② 소관 법령안의 조문·용어·내용 등의 변경에 따라 다른 법령에 개정할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관계 기관 협의 시 연관법령의 동시개정 필요성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 결과 동시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관법령 개정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동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연관법령 개정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시스템에서는 연관법령카드 및 각종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연관법령 개정 관련 법제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p.303 이하 참조)

2018년부터는 법령에 사용되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법령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처협의안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의 법령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법제국은 온나라문서를 통해 송부된 부처협의안을 접수처리하며, 법령용어순화팀은 접수된 부처협의안을 검토한다. 부처협의안 검토를 통해 법령용어순화팀은 그 속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고 해당 용어의 정비안을 마련한다.

법령용어순화팀은 정비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처와 법제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정비안이 마련되면 소관 부처와 법제국에 통보한다. 정비안을 통보받은 법제국은 해당 정비안이 포함된 법령안 심사 시 정비안을 반영한다.

04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영향평가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성평등이나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자치분권 원칙에 대한 적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전영향평가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약이 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영향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해야 하고,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6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자치분권 사전협약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 심사를 요청할 때 첨부해야 하므로 해당 사전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하여 입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종 사전영향평가 담당부서

-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 통계기반정책평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성별영향평가: 성평가측부 성별영향평가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침해평가과
- 자치분권 사전협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05 입법예고

가. 취지 및 연혁

법령안 주관기관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의 원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안을 확정된 후 입법예고를 하게 된다.¹⁰⁾ 입법예고는 정부가 법령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내용의 민주화도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¹¹⁾, 1998년부터는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

한편, 앞서 설명한 관계기관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한 것과 같은 취지로 정부입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을

10) 입법예고의 시기에 대해 종전에는 관계 기관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대통령령 제21533호로 개정되기 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1항)되어 있었으나, 2009. 6. 9.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관계 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11) 1983년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11133호, 1983. 5. 21.)되면서 시행되었고, 이후에 제정된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4748호, 1995. 8. 10.)에 그 내용의 대부분이 흡수·반영되었다.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예고사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2항).

또한, 관보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이원화된 입법예고 실시로 인하여 국민이 법령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의견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입법예고센터의 도입 근거를 마련(「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1항)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나.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입법예고

종전에는 각 부처에서 입법예고 공고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령안 전문은 각 부처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하는 방식으로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6년 4월 21일 통합입법예고센터가 개통된 후에는 관보에 입법예고 공고문¹²⁾을 게재하는 것 외에도,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 공고문 및 법령안 전문 그 밖에 참고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실무적으로, 각 부처는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공고문을 관보 게재 요청함과 동시에,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에는 입법예고안을 통합입법예고센터에 등록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이 때 법령안 전문 외에 규제영향분석서, 조문별 법령 제정·개정이유서 등 참고·설명자료를 반드시 포함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3항). 다만, 해당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붙임 제2호서식)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입법예고 공고문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4항).

12) 표준 입법예고 공고문안: 붙임 제1호서식

다. 입법예고의 기간 및 생략·단축 등

입법예고의 기간은 40일 이상이 원칙(「행정절차법」 제43조)이다. 다만,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6조).

기술규정 등 입법예고 시 WTO 통보의무

-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또는 라벨링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WTO TBT 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WTO 사무국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게 예고내용을 통보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따라서,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또는 라벨링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WTO TBT 협정 등에 따라 WTO 사무국 등에 대한 통보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한편, 「행정절차법」은 긴급하게 입법이 필요한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고를 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법제정책총괄과)과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

또한,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때에도 법제처장(법제정책총괄과)과 협의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 그리고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국회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

라. 입법예고의 재실시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해당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입법예고는 정부정책을 법제화할 때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초 입법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입법예고의 취지 자체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¹³⁾

또한, 최근 법원에서 입법예고 후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2018누71863, '19.5.10. 서울고등법원)한 경우도 있으므로 입법예고 후에 내용이 변경된 경우 국민의 의견 제출 기회 박탈 및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재입법예고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재입법예고 여부를 고려해야 할 사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¹⁴⁾

재입법예고 여부를 고려해야 할 사례

1.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가 추가되거나 강화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경우

- ▶ 개별행위 또는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허가·등록·신고 제도 등의 추가 및 결격사유 도입·변경
- ▶ 행정상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 과태료 및 과징금, 이행강제금, 연체금·가산금 부과제도의 추가 또는 부과 기준 변경

13) 따라서, 담당 법제(심의)관실에서는 접수된 심사의뢰안과 입법예고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4) 다만, 이 경우에도 모두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추가·변경된 내용과 당초에 예고된 내용 간의 관련성이 적어, 당초의 입법예고를 통해서 관련 이해관계자 등이 그 추가·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령심사 등의 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 내용의 논리적·법리적·법체적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등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 자연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자격 제도의 추가·변경
- ▶ 토지의 수용·사용 등 재산권 제한 제도의 추가·변경
- ▶ 벌칙의 신설·변경

○ 최초 입법예고안의 수혜적인 내용을 삭제·축소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수정되는 경우

- ▶ 최초 입법예고안에는 민간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입법예고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한 경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국민의 권리 신장, 의무 경감 또는 혜택 증대 등 국민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 내용이 일부 국민에게는 유리하지만 제3자의 이익 또는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최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생계비와 급여, 예금액의 압류금지 최저한도를 180만원으로 하였으나, 18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변경해서 채무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민사집행법」)
- ▶ 최초 입법예고안에는 없었던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근로장려금의 지급 재산요건 상한 인상을 추가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완화된 반면 국가재정부담 등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 ▶ 그 밖에 허가기준 등을 완화하도록 변경하여 사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국민안전 등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신규사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기존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등

2.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련 사항은 아니지만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항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 ▶ 최초 입법예고된 내용 중 대체복무자의 복학 및 복직 보장, 소집일 연기 등 일반적 병역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병역법」)

3. 법령안의 취지·주요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

○ 최초 입법예고안의 본질적 부분이 변경되거나 관련성이 적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경우

- ▶ 최초 입법예고안에는 재정정보의 공표범위와 공표주기 등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내용만 있었는데, 국민참여예산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경우(「국가재정법 시행령」)

- 최초 입법예고 후 장기간 입법절차가 정지된 경우 등 입법환경의 변화 등으로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동일기업·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최초 입법예고를 실시(‘17.3.21. ~ 5.1.)하였는데 개정이 장기간 지연되었다가 지연사유가 해소된 ’18년 6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입법을 재추진하는 경우(「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4. 부칙의 추가·변경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 시행일, 유효기간, 규제의 존속기한과 관련하여 최초 입법예고안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시기, 기간 또는 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 수익적 내용의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침익적 내용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거나 유효기간 또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수익적 사항의 적용 대상이 축소되거나 침익적 사항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도록 변경되는 경우

▶ 최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등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 및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로 종전의 규정의 적용대상을 축소한 경우(「대학 설립·운영 규정」)

-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기존의 법 적용대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 최초 입법예고안에는 종전에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종전에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부터 3년의 유효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특례규정으로 변경한 경우(「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 최초 입법예고안은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된 지주회사 자산요건에 대하여 기존 지주회사는 기간 제한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는데,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10년 동안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변경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 법제처의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5항).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로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1조제3항).

바. 제출의견의 처리

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령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제1항). 또한,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제2항).

특히, 통합입법예고센터 개통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 제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제출된 의견의 처리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제출되면, 소관부처의 담당자에게 의견이 제출된 사실을 알리는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관보 게재 시 명시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됨)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되면, 소관 부처 담당자는 정부입법지원센터(정부입법 ☞ 국민참여 관리 ☞ 통합입법예고 관리 ☞ 입법예고 등록·관리)의 “입법의견 관리” 메뉴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등록함으로써 제출 의견을 처리할 수 있다.

사. 확인 및 점검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법령안을 심사할 때에는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지 않은 의견 중 법리적인 사항이나 입법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06 규제심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 의견,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예비심사)하고,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규제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하여 종결처리하며, 중요규제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본 심사를 진행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

규제심사 흐름도 ① 규제심사대상인 경우

절차	담당기관	주요내용
정책입안 및 사전검토	소관부처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에 대한 초기 검토,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논의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Off-line) : 입법예고 7~14일 전 - 해당 법령안의 규제심사대상여부, 규제조문 및 규제영향분석서 유형 (표준/간이)을 규제조정실과 협의
영향분석서 작성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협의된 내용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 통해 작성하고 중소기업 영향분석은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매뉴얼 활용
규제심사 대상여부 등 결정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심사대상여부를 정식 검토요청 -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부실한 작성 등 부적절한 규제영향분석서는 반려될 수 있음 - 비용감축제 적용여부 검토
입법(행정) 예고 (20~60일)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개정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입법(행정)예고(행정규제 기본법 제7조제2항) ※ WTO TBT 통보대상 기술규제의 경우 60일 이상 예고해야하므로 기술규제가 있는 경우 자체 검토
비용검증 및 중기·경쟁·기술 영향평가 (20일~60일, 입법예고와 동시진행)	규제연구 센터 (비용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영향분석서 내 비용분석에 대한 규제연구센터 검증 ※ 비용·편익 분석 사항 수정·보완(소관부처) ※ 검증결과에 따라 비용·편익 및 비용감축제 적용여부 확정
	비용분석 위원회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상 중요규제(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호)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종결 ※ 위원회 자문의견은 예비심사 전까지 검토하여 보완
검증의견 종합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연구센터 검증의견 및 분야별 영향평가 의견 등 종합
자체심사	소관부처 (자체규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조실·규제연구센터 검토의견, 이해관계자·관련부처 의견,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수정·보완 ※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지체없이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소관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규제심사	규제개혁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본심사(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의결되면 심사종결

※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제2항에 따라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안은 행정예고(20일간) 및 법제처 검토를 규개위에 비심사 전까지 완료해야 함

⇒ 규제심사이후 법령안 내용 변경 시 규제심사대상 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규제실과 재협의

〈출처: 2024.9.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규제심사 흐름도 ② 규제심사비대상인 경우

절차	담당기관	주요내용
정책입안 및 사전검토	소관부처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에 대한 초기 검토,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논의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Off-line) : 입법예고 7~14일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령안의 규제심사대상 여부를 규제조정실과 협의 (규제 폐지·완화인지 여부 포함)
▼		
규제정보화 시스템 입력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심사대상 여부를 정식 검토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상 사유를 정확히 입력하고 규제의 폐지·완화로 심사 비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규제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		
확인증 발급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 종료일 다음날 규제정보화시스템에서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처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규제조정실에 공유

〈출처: 2024.9.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2026년도 법제업무편람

법제처 심사 전의 입법절차

